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2차)-
광주광역시 특정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 사 명 :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 특정감사(2차)
2. 감사범위 : 채용절차, 면접위원 구성 등 적정성
3. 감사기관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4. 감사기간 및 감사반
가. 감사기간 : 2018. 10. 15. ~ 10. 17. (3일간)
나. 감 사 반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회계감사팀 3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 1건(채용 면접 시험 채점표 소홀 등)
2. 처분사항 : 행정상 처분 2건

계	주의	개선
2건	1건	1건

III. 지적사항 세부내역 (1건)

1. 제목 : 채용 면접시험 채점표 소홀 등
2. 지적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과 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15조(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에서는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는 면접시험 점수 집계시 심사위원 서명누락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누락된 채점표에 대하여 현장에서 서명날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하지만, 공사에서는 2018년 업무직 19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채점표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채점표를 최종집계에 포함시켜 합격처리하였음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부면접위원 선정시 인력풀을 활용하여 외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하지만, 공사에서는 2018년 업무직 1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 제15조(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 제4항에 따라 면접위원은 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접위원을 공사사장이 지명한 3명(내부 1명, 외부 2명)으로만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진행

3. 조치할 사항

가. 행정상 주의

- 앞으로 신규직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시 면접위원 서명 누락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나. 행정상 개선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제4항에 따라 면접위원은 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2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촉하도록 개정